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7.10.12.(목) / 총1매(본문1)
담당 부서	부동산평가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박병석, 사무관 정민승, 주무관 오은숙 • ☎ (044) 201-3423, 3429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‘상가빌딩 가격공시 추진...세금 폭탄 터지나’ 보도 관련

- '15년에 시행한 비주거용 연구용역의 결과는 강남구 등 17개 시·군·구의 일부 비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나온 가격수치로서 전국적으로 확대하기가 곤란해,
 - 후속 연구를 통해 전국적인 가격모델을 산출할 예정입니다.
 - 특히, 분석의 핵심자료인 과세정보* 활용에 애로가 있어 추정치를 사용한 한계가 있습니다.
 - * 과세정보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·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말하며,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불가(국세기본법)
- 연구내용의 재산세 증가와 관련해서는 공시비율¹⁾, 세부담 상한제²⁾ 등의 완충장치가 미반영된 예상치로서,
 - '05년에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도 완충장치(공정시장 가액비율³⁾ 신설, 세부담 상한제 도입 등)를 둬으로써 세금을 전년도 대비 10% 이내로 산정한 바 있습니다.
 - * 1) 주택공시제도 도입 시 과세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 비율(주택공시가격 = 조사·산정한 주택가격 * 공시비율)

- 2) 재산세, 종부세 등 산정 시 직전연도 대비 세부담 증가분이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정한 제도(주택 105~130%)
- 3)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(과세표준=공시가격×공정 시장가액비율)

□ 한편,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여부는 연구용역과는 별개 사항으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, 도입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조선일보, 10.11. >

◆ 상가·빌딩 가격공시 추진...‘세금 폭탄’ 터지나

- 국토부, 도입 준비 내년 마무리
- 상업·업무용 부동산 가격공시가 시행될 경우 평균 재산세가 적게는 69%, 많게는 72% 정도 높아질 것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정민승사무관(☎ 044-201-342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